

사업 연도	. . . ~ . . .	<b>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</b>	법 인 명
			사업자등록번호

**1.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[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[ ]여, [ ]부]**

① 차량 번호	② 차종	③ 임차 여부	④ 보험 가입여 부	⑤ 운행 기록 작성여 부	⑥ 총 주행 거리 (km)	⑦ 업무용 사용거리 (km)	⑧ 무 사업비 비율 (⑦/⑥)	⑨ 취득가액 (취득일, 임차기간)	⑩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	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				
										⑫ 감가 상각비	⑬ 임차료	⑭ 유류비	⑮ 보험료	⑯ 수선비
								(. . .) ~ (. . .)						
								(. . .) ~ (. . .)						
								(. . .) ~ (. . .)						
								(. . .) ~ (. . .)						
								(. . .) ~ (. . .)						
⑰ 합계														

**2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**

⑰ 차량 번호	⑳ 업무사용금액			㉑ 업무외사용금액			㉒ 감가상각비 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
	㉓ 감가상각비 (상당액) [(㉑ 또는 ㉒) × ⑧]	㉔ 관련비용 [(㉑-㉒ 또는 ㉑-㉒) × ⑧]	㉕ 합계 (㉓+㉔)	㉖ 감가상각비 (상당액) (㉑-㉓ 또는 ㉒-㉓)	㉗ 관련비용 [(㉑-㉓ 또는 ㉑-㉓)-㉔]	㉘ 합계 (㉖+㉗)	
㉙ 합계							

3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㉔ 차량번호	㉕ 차종	㉖ 취득일 (임차기간)	㉗ 전기이월액	㉘ 당기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	㉙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누계	㉚ 손금추인(산입)액
㉛ 합계						

4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

㉜ 차량번호	㉝ 양도가액	㉞ 세무상 장부가액				㉟ 처분손실 (45-50<0)
		㉟ 취득가액	㊱ 감가상각비 누계액	㊲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 액 차기이월액 (=42)	㊳ 합계 (47-48+49)	
㊴ 합계						

5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㊵ 차량번호	㊶ 차종	㊷ 처분일	㊸ 전기이월액	㊹ 손금산입액
㊺ 합계				

작성 방법

1. 업무사용비용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

- 가. "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"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"여"에 체크합니다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)
  - i)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% 초과, ii)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·이자·배당 소득의 합계가 70%이상, iii)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
- 나. 차량번호란(㉠):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.
- 다. 차종란(㉡):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.
- 라. 임차여부(㉢):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(자가, 렌트, 리스)를 적습니다.
- 마. 보험가입여부란(㉣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. (기재형식 : 여 또는 부)
- 바. 운행기록작성여부란(㉤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여부를 적습니다. (기재형식 : 여 또는 부)
- 사. 총주행거리란(㉥):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.
- 아. 업무용 사용거리란(㉦)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·대리점 방문, 회의 참석, 판촉 활동,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.
- 자. 업무사용비용율란(㉧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,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비율을 적습니다.
  - 1.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,500만원[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(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. 이하 같음]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00
  - 2.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1,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
    - \*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(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)하는 경우 1,500만원 ×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
- 차.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(㉨) :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(임차)하는 경우 취득일(임차)의 경우 임차 개시일(임차)의 경우 임차 개시일(임차)의 종료일(임차)을 적습니다.
- 타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율란(㉩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.

2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

- 가. 업무사용금액(㉪)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용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- 나. 업무외사용금액(㉫)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(㉬):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(상당액)이 800만원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)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 - \*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(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)하는 경우 800만원 ×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

3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명세

- 가. 전기이월(㉭):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.
- 나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액 누계(㉮): ㉬의 금액과 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손금추인(산입)액(㉯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(상당액)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(산입) 합니다.

4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

- 가. 감가상각비 누계액(㉺): 「법인세법」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.
- 나. 처분손실(㉻):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다. 당기손금산입액(㉼): ㉻의 금액이 800만원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)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.
  - \*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× 해당 사업연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
- 라.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(㉽): ㉻의 금액이 ㉼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5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

- 가. 전기이월액(㉾):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.
- 나. 손금산입액(㉿):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)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
  - \*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× 해당 사업연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